Q: 대한항공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몇 주를 청약할 수 있나요?

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때는 신주배정기준일 못지 않게 신주배정비율도 꼭 기억해야 해요. 말 그대 로 기존의 1주당 신주가 얼마나 배정되는지를 뜻 하는 개념. 대한항공의 비율은 1주당 0.792200 0960주.

간단하게 1주당 0.79주 즉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신주 79주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. 초과청약도 가능해요.

*초과청약=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는 것(자본시장법 제16 5조의6②조 2항). 대한항공은 1주당 0.2주씩 초과청약 가능.

초과청약 가능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주식이 아니라,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신주수량에서 0.2주를 곱하는 방식. 100주를 가진 사람은 신주 79주를 청약할 수 있으니, 다시 79주에서 0.2를 곱하면 15.8주=15주(1주 미만은 절사=버림)

따라서 100주를 가진 사람이 초과청약까지 한다면 최대 94주(신주 79주+초과청약 15주)를 살수 있죠. 다만 초과청약 신청이 많다면 경쟁률에 따라 나누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는 수량을 다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